

[별표 12] <개정 2005.3.8, 2006.2.24>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제95조제1항관련)

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2.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당해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 내지 제6호·제10호·제16호 내지 제18호·제20호·제22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 (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 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마.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사.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4.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부 표] <개정 2006.2.24>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단위 : 원)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
1. 귀금속점포영업허가	100,000
2. 영업소지자허가	30,000
3. 사행행위허가 가. 복표발행(현상을 포함한다) 나.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이와 비슷한 사행행위 다. 카지노	500,000 300,000 3,000,000
4.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100,000
5. 주류제조업면허	300,000
6. 수렵면허 가. 1종면허 나. 2종면허 다. 삭제 <2006.2.24>	100,000 50,000
7.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전용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다)은 연면적 165제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때에 한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1973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과 1973년 2월 27일 이후 1975년 12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주거전용건축물로서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주거전용건축물에 있어서는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난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또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	

준으로 하되, 용도변경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국
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가. 주거전용건축물

(1)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거전용면적 미터당	제공 300
(2)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132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	1,300
공동주택	"	1,000
(3) 주거전용면적이 132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	2,400
공동주택	"	2,000
(4)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23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	5,000
공동주택	"	4,000
(5) 주거전용면적이 231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000
(6) 주거전용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7,000
(7) 주거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8,000

나. 주거전용외의 건축물(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 또는
읍·면지역에서 신·증축하는 공장용건축물과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교육용·종교용·자선용 그 밖의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극장·영화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게임장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	연면적	제곱미터당 4,000
(2) 그 밖의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	1,300
(3) 연화조 및 석조의 건축물	"	1,000
(4)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	600
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	500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8. 건설업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2/1,000. 다만, 주택건설사업 등록후 건설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9. 공유수면매립면허	면허수수료의 20/100
10. 건설기계신규등록	과세표준액의 5/1,000
11. 정보통신공사업허가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12. 전기공사업신규면허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13. 소방시설공사업면허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14. 측량업등록	50,000
15. 건축사사무소등록 가. 특별시 및 광역시 나. 각 도청소재지 다. 그 밖의 지역	100,000 50,000 30,000

16.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유흥주점영업 700,000 나.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다.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에 한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150,000 (2) 각 도청소재지 100,000 (3) 그 밖의 지역 70,000 라.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에 한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300,000 (2) 각 도청소재지 2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마. 유제품제조업·마가린 또는 쇼트닝유제조업·식육제품제조업·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청량음료제조업 및 당류제조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200,000 (2) 각 도청소재지 15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1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가.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나. 각 도청소재지 30,000 다. 그 밖의 지역 20,000	
18.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의 신규등록	5,000,000
19.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 택	
(가)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 신	시가표준액의
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13/1,000
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1)	
에서 같다]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9/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1/1,000
2) 그 밖의 지역	" 16/1,000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3/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6/1,000
2) 그 밖의 지역	"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31/1,000
2) 그 밖의 지역	" 26/1,000
(2) 토 지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5/1,000
2) 그 밖의 지역	" 20/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40/1,000
2) 그 밖의 지역	"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50/1,000
2) 그 밖의 지역	" 45/1,000
(3) 주택 및 토지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0/1,000
2) 그 밖의 지역	" 8/1,000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6/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20/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18/1,000
(나) 그 밖의 지역	" 14/1,000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28/1,000
(나) 그 밖의 지역	" 25/1,000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42/1,000
(나) 그 밖의 지역	" 39/1,000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저당권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0. 자동차대여사업등록	500,000
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	500,000
22.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등록	
가. 자동차정비업등록(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100,000

(2) 각 도청소재지	80,000
(3) 그밖의 지역	50,000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100,000
23. 법인설립등기(「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에 한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전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업유치지역내에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는 제외한다)	자본금의 1/1,000
24. 주택건설사업등록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다만, 건설업 등록후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산정시 제외한다.
25. 주택관리업등록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26.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한한다) 또는 정부투자기관과의 공사도급계약(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 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금액의 1/1,000
27.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사력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5/100